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등의 수입 규제에 관한 WTO 패널 보고서 공표에 관하여

2018년 2월 23일

수산청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등의 수입 규제와 관련, 2018년 2월 22일(제네바 현지시간), WTO협정에 근거한 패널(분쟁해결소위원회) 보고서가 공표되었습니다.

패널 보고서는,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등의 수입 규제에 대하여, WTO/SPS협정(위생식물검역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 한국의 조치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이번 패널의 판단을 환영함과 동시에, 이번 보고서에 따라 WTO/SPS협정에 위배된다고 인정된 조치를 한국이 조속하고 성실히 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1. 경위

한국은, 2011년 3월 도쿄전력주식회사 후쿠시마제1원자력발전소에서의 사고 후, 8개 현에서 어획되는 일부의 수산물 등에 대하여 수입 규제를 도입하고, 나아가, 2013년 9월에 규제를 강화^(주)하였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수입 규제는 WTO/SPS협정의 의무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2015년 5월 WTO협정에 근거한 양국 회담을 요청, 같은 해 8월에 WTO협정에 근거한 패널의 설치를 요청하고 이에 따라 같은 해 9월에 패널이 설치되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수입 규제에 대하여 자의적 또는 부당한 차별 금지(SPS협정 제2조3) 및 필요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지 않을 것을 확보하는 의무(동 협정 제5조6)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패널에서 약 2년 반에 걸친 검토를 거쳐, 2018년 2월 22일(제네바 현지시간), WTO에 의해 패널 보고서가 공표되었습니다.

(주)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등의 수입규제 강화 개요(2013년 9월 ~)

(1)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 수입 금지

8개 현산(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의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

(2)일본산 모든 식품에 대한 추가 검사 요구

일본산 모든 식품에 대하여 세슘 또는 요오드가 미량이라도 검출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방사성물질(스트론튬, 플루토늄 등)의 방사성물질 검사 결과 증명서를 요구.

2. 패널 보고서 내용

패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한국에게 WTO/SPS협정에 따라 조치를 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1) 8개 현산 수산물의 수입 금지

패널은, 한국의 일본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 수입 금지 조치의 해제를 요구하는 28개 어종^(주)에 대하여 「동일 또는 같은 조건 하에서의 자의적 또는 부당한 차별」(SPS협정 제2조3)에 해당, 또한, 「필요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동 협정 제5조6)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일본산 모든 식품에 관한 추가 검사 요구

패널은, 한국의 일본산 모든 식품에 관한 추가 검사 요구에 대하여 「동일 또는 같은 조건 하에서의 자의적 또는 부당한 차별」(SPS협정 제2조3)에 해당, 또한, 「필요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동 협정 제5조6)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조치 불공표 및 정보 제공 결여

패널은, 한국의 일본 8개 현산 수산물의 수입 금지 및 일본산 모든 식품에 관한 추가 검사 요구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회원국이 알 수 있도록 신속하게 공표할 것을 확보하는 의무 등(SPS협정 제7조 등)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일본이 수입 금지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28개 어종

정어리, 멸치, 전갱이, 고등어, 망치고등어, 방어, 명태, 대구, 연어, 금눈돔, 참다랑어, 날개다랑어, 눈다랑어, 황다랑어, 청새치, 황새치, 가다랑어, 청상아리, 악상어, 꽁치, 살오징어, 참문어, 문어, 밤나무문어(학명:Octopus (Parochopus) conispadiceus) ,전복, 가리비, 굴, 멍게

3. 향후 예정

일한 당사국은, 공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WTO상급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당사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패널 보고서 내용으로 WTO에서 판단이 확정됩니다.

(참고1)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등의 수입 규제와 관련된 WTO 분쟁 해결 절차의 지금까지의 경위

< 2015년>

- 5월 21일 : 일본이 WTO협정에 근거하여 양국 간 협의 요청
- 6월 24·25일 : 양국 간 협의 실시
- 8월 20일 : 일본이 패널(분쟁해결소위원회) 설치를 요청
- 9월 28일 : WTO분쟁 해결 기관의 회의에 의해 패널 설치

< 2016년>

- 2월 8일 : WTO 사무국장의 임명에 따라 패널리스트 결정
(Mr. William Ehlers(우루과이) 【의장】 ,Ezzeddine Boutrif (프랑스/튀니지),
Mr Minn Naing Oo(싱가포르))
- 3월 14일 : 일본이 제1차 의견서를 WTO에 제출
- 4월 25일 : 한국이 제1차 의견서를 WTO에 제출
- 7월 12·13일 : 제1회 패널 회의
- 7월 15일 : 패널이 전문가를 선정
(방사능물질 등에 관한 식견을 가지고 중립적 입장에서 패널에게 조언하는 5
명의 과학자)
- 8월 24일 : 일본 및 한국이 제2차 의견서 제출

< 2017년>

- 2월 9·10일 : 패널 전문가와의 회의
- 2월 13·14일 : 제2차 패널 회의
- 10월 16일 : 패널 보고서 일한 당사국에 배포

< 2018년>

- 2월 22일 : 패널 보고서 전 회원국에게 배포 및 공표

(참고 2)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등의 수입 규제 강화 개요 (2013년 9월 9일~)

1. 8개 현산 수산물의 수입 금지 조치 확대

종전의 수입 금지 품목		강화 후의 수입 금지 품목	
후쿠시마현	까나리, 대구, 산천어 등 49종	후쿠시마현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 금지
이바라키현	민어, 대구, 뱀장어 등 10종	이바라키현	
군마현	산천어 등 2종	군마현	
미야기현	농어, 대구 등 9종	미야기현	
이와테현	농어, 대구 등 6종	이와테현	
도치기현	황어 등 3종	도치기현	
지바현	붕어, 잉어 2종	지바현	
아오모리현	대구 1종	아오모리현	

2. 일본산 식품의 추가 검사 조치 확대

종전의 조치	강화 후의 조치
수산물·축산물에 대해서는, 한국 측의 검사에서 <u>세슘 또는 요오드가 검출된 경우라도, 100Bq/kg 이하라면 수입 가능</u> (주)농산물·가공식품은, 종전부터 조금이라도 세슘 또는 요오드가 검출되었을 경우에는 <u>스트론튬, 플루토늄 등의 검사 증명서를 추가로 요구</u>	<u>모든 식품(수산물·축산물 포함)에 대해, 한국 측의 검사에서 조금이라도 세슘 또는 요오드가 검출되었을 경우에는,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의 검사 증명서를 추가로 요구</u>